DEDICA
—DEDICATED LAWYERS—

외국인 VNeID 계정 등록
무엇이 필요할까요?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

근거: 시행령 제69/2024/ND-CP호(시행령 제320/2026/ND-CP호로 개정·보충)

www.dedica-law.com · david@dedica-law.com · 039 969 0012

DEDICA
—DEDICATED LAWYERS—

계정 연동 기한

은행, 통신, 소셜 미디어 등의 계정은 언제까지 전자신원확인 계정과 연동해야 할까요?

2026년 12월 31일

오른쪽에 열거된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2026년 9월 28일 이전에 개설된** 전자거래 계정, **은행 분야 제외**

2027년 6월 30일

2026년 9월 28일 이전에 개설된 **은행 분야** 전자거래 계정

연동·인증 의무 분야

- 교육, 디지털 문해 교육
- 증권
- 통신
- 은행
- 전자 인보이스
- 운송업
- 관광업
- 의약품업
- 진료·치료
- 소셜 미디어
- 전자상거래(판매자, 라이브 방송 판매자, 제휴 마케터)

베트남에서 위 분야를 서비스하는 디지털 플랫폼상의 전자거래 계정.

외국인은 전자신원확인 계정이 있어야만 연동·인증이 가능하므로 위 기한 전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시행령 제69/2024/ND-CP호 제40.9조 (시행령 제320/2026/ND-CP호 제19조로 보충); 시행령 제320/2026/ND-CP호 제20.3조

DEDICA
—DEDICATED LAWYERS—

발급 대상

어떤 외국인이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전

영주증 또는 임시거주증이 있어야 하며, 계정은 연령에 따라 01·02 단계로 구분

시행령 제69/2024/ND-CP호 제7.2조 원문

"만 *06*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영주증 또는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필요한 경우 01단계 전자신원확인 계정 및 02단계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 06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영주증 또는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필요한 경우 01단계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26년 9월 28일 부터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기만 하면 되며, 단계 구분과 최소 연령 규정이 없음

제7.2조 개정 후 원문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단계 구분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제정 근거: 「베트남 외국인 입국·출국·통과·거주법」은 "외국인에 대한 전자신원확인 계정의 발급 및 사용"을 정부가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제46.3조, 법률 제118/2025/QH15호로 개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법적 근거: 시행령 제69/2024/ND-CP호 제7.2조 (시행령 제320/2026/ND-CP호 제3조로 개정); 법률 제118/2025/QH15호 제2.13조

DEDICA
—DEDICATED LAWYERS—

등록 장소

어디에서 등록하나요? 외국인이 VNeID 앱에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나요?

현재 등록 장소

성(省)급 공안 출입국관리 기관

외국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 또는 국제 여행 효력이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VNeID 앱 자가 등록 절차는 더 이상 없음

2024년 7월 1일 시행령 제69/2024/ND-CP호

두 가지 방법: VNeID 앱에서 01단계 계정을 직접 등록하거나, 공안부 또는 성급 공안 소속 출입국관리 기관에서 02단계를 등록.

2026년 4월 29일 결의 제22/2026/NQ-CP호

외국인에 대한 01단계 계정(앱 자가 등록) 및 부(部) 단위에서 처리하던 02단계 계정 발급 절차를 폐지.

2026년 9월 28일 시행령 제320/2026/ND-CP호

성급 공안 출입국관리 기관에서 처리하는 단일 절차로, 계정 단계 구분이 없음.

법적 근거: 시행령 제69/2024/ND-CP호 제11조 (원문 및 시행령 제320/2026/ND-CP호 제6조로 개정된 내용); 결의 제22/2026/NQ-CP호 부록 I.3 제I, II항

DEDICA
—DEDICATED LAWYERS—

절차

외국인에 대한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 절차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01 외국인
성급 공안 출입국관리 기관을 방문하여 여권 또는 국제 여행 효력이 있는 서류를 제시합니다.
(제11.1조)

02 외국인
TK01 양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 연동 신청 정보.
(제11.2조)

03 접수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국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위해 얼굴 사진과 지문을 수집하며, VNeID 설치 및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11.3조)

04 출입국 기관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에 계정 발급을 요청합니다.
(제11.4조)

05 시스템 관리 기관
VNeID 앱,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11.5조)

06 외국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07일 이내에 VNeID에서 계정을 활성화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전자신원확인·인증 콜센터에 문의합니다.
(제14.1조)

빨간색 상자: 외국인이 하는 일. 보라색 상자: 국가기관이 하는 일.

법적 근거: 시행령 제69/2024/ND-CP호 제11조 (시행령 제320/2026/ND-CP호 제6조로 개정); 시행령 제69/2024/ND-CP호 제14.1조

DEDICA
—DEDICATED LAWYERS—

서류 체크리스트

외국인이 등록하러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번호	준비물	요건	근거
1	**여권 또는 국제 여행 효력이 있는 서류**	절차 진행 시 제시	제11.1조
2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 신청서(TK01 양식)**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 양식은 베트남어·영어 병기	제11.2조; TK01 양식
3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TK01 양식에 기재; 결과 통지를 받는 경로 중 하나	제11.2, 11.5조
4	**이메일 주소**	있는 경우	제11.2조
5	**연동을 신청하는 서류 정보**	TK01 양식 B항목에 서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	제11.2조; TK01 양식
6	**디지털 기기(휴대전화)**	VNeID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접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기 위함	제11.3조
7	**대리인, 후견인(만 14세 미만인 사람, 피후견인, 피대리인의 경우)**	동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신고; TK01 양식 C항목 작성	제11.6조; TK01 양식

법적 근거: 시행령 제69/2024/ND-CP호 제11조 (시행령 제320/2026/ND-CP호 제6조로 개정); 시행령 제69/2024/ND-CP호 부록의 TK01 양식

DEDICA
—DEDICATED LAWYERS—

처리 기간 및 비용

계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외국인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영업일 02일

국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얼굴 사진과 지문이 이미 있는 경우

이전: 영업일 03일(02단계)

(제13.3.a조)

영업일 05일

국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얼굴 사진과 지문이 아직 없는 경우

이전: 영업일 07일(02단계)

(제13.3.b조)

07일

VNeID에서 계정을 활성화해야 하는 기한으로, 계정 발급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

(제14.1조)

0동

계정 등록·발급 비용과 전자거래에서 본인 계정을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제27.1조)

처리 기간은 "적법하고 완비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리 기간이 영업일 02일인지 05일인지는 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지문이 국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 시행령 제69/2024/ND-CP호 제13.3조 (시행령 제320/2026/ND-CP호 제7.1조로 개정); 시행령 제69/2024/ND-CP호 제14.1, 27.1조

DEDICA
—DEDICATED LAWYERS—

활용 가치

전자신원확인 계정이 있으면 외국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연동된 서류는 제출·제시할 필요 없음

VNeID에 연동된 서류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개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 절차, 공공 서비스, 민사 거래 및 그 밖의 활동을 처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4.4조).

개인 연동 목록에 포함된 서류 예시

- 비자; 비자 면제 증명서
- 외국인 임시거주증, 영주증
- 투자 허가서, 투자 증명서
- 세무 등록 증명서
- 사회보험 수첩;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 등록 증명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한 출입국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발급받았거나 국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충분히 수집·갱신된 외국인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출국·입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공안부가 안내합니다.

법적 근거: 시행령 제69/2024/ND-CP호 제4.4조 (시행령 제320/2026/ND-CP호 제2조로 개정); 시행령 제320/2026/ND-CP호 부록 목록 1 및 제20.1조

DEDICA
—DEDICATED LAWYERS—

특수한 경우

만 14세 미만 외국인은 어떻게 등록하고, 계정은 언제 잠기나요?

만 14세 미만인 사람, 피후견인, 피대리인

(i) 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함께 성급 공안 출입국관리 기관을 방문합니다(제11.6조).

(ii)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신고·등록합니다(제11.6조).

(iii) 계정 사용은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VNeID를 통해 동의·확인해야 합니다(제14.2조).

다음의 경우 계정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i) 외국인이 본인 계정의 잠금을 요청한 경우;

(ii) 국가 신원확인 앱 이용 약정을 위반한 경우;

(iii) 여권 또는 국제 여행 효력이 있는 서류가 만료된 경우;

(iv) 베트남 영토 내 체류 기간이 끝난 경우;

(v)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잠금 사유가 사라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잠금을 해제합니다(제15.3.a조).

참고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어 본인 명의가 아니게 된 경우 계정을 자동으로 잠그는 신설 규정(제15.1.b조)은 베트남 국민에게 적용되며, 외국인 계정의 잠금 사유는 위의 다섯 가지 그대로입니다.

법적 근거: 시행령 제69/2024/ND-CP호 제11.6조 (시행령 제320/2026/ND-CP호 제6조로 개정); 시행령 제69/2024/ND-CP호 제14.2, 15.2.a, 15.3.a조

문의하기

DEDICA의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팀이 언제나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의하셔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기업 및 투자
형사 변호
상시 법률 자문
인수합병(M&A)
분쟁 해결
상표 및 저작권

주소

호찌민시 쑤언호아 동 하이바쯩 거리 171번지 A&T 빌딩 11층

전화

+84 39 969 0012

Email

david@dedica-law.com

Website

www.dedica-law.com

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상담을 받아보세요.